軍 장성급 인사… 전문·야전형 대거 발탁

광양 출신 정현석, 학사장교로는 첫 장군
중장·준장 진급자 65명중 호남출신 10명

전투병과 첫 여성장군 탄생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 12일만인 16일 처음으로 단행한 후반기 장성진급 인사에서는 전문성과 야전형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 6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는 능력 위주로 하며, 그 능력은 군에 대한 전문성,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전문성을 뜻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번 인사에 상당 부분 적용됐다는 것이다.

광양 옥룡 출신으로 학사 3기인 정현석 대령이 학사장교로는 첫 장군이 됐으며, 여군 전투병과로는 처음으로 송명순(여군29기·52) 대령이 별을 달아 해당 특기와 출신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간 여군 장성은 간호병과에서 배출됐으며 전투병과는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됐다.

순천고(27회)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학사3기로 임관한 정 준장은 1983년 함께 임관한 육사 39기 동기생들이 2008년 첫 장성을 배출한 것보다 2년 늦었지만 학사 선배들이 오르지 못한 고지를 점령했다.

육군개혁실 제도개혁과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정 준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장군으로 발탁해준 군과 조국에 감사하다. 앞으로 조국과 군에 헌신·봉사하겠다"라며 "타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학사장교 출신으로, 첫 장성 진급의 영예를 안은 만큼 많은 후배 학사장교에게 희망을 주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근무한 인물을 발탁한 것도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방정보본부장을 맡게 된 공군 윤학수(공사25기·55) 중장은 작년 인사에서 탈락해 내년 1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연합정보 및 대미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가까스로 구제됐다.

작년 인사에서 누락됐던 최종일(육사34·56) 중장은 연합작전분야 전문성으로 발탁됐고, 육군 김명섭 소장은 군수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공군 김홍온 소장은 군수특기로는 처음으로 공군 군수부장을 맡게 됐다.

군단장으로 진출하는 박선우(육사35기·53) 중장은 자이툰사단장과 3군사령부 작전처장을, 이용광(학군16기·56) 중장은 7포병여단장을 역임한 야전통으로 손꼽힌다.

해군의 경우 일선 야전부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많이 발탁됐다. 준장 진급자 13명 가운데 50%가 작전 및 야전부대 근무경험이 많은 인물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종일 준장은 천안함의 소속 부대인 2함대 22전대장을, 심승섭 준장은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있었다. 윤정상 준장은 잠수함 함장 출신이며, 정진섭 준장은 합참 해상작전과장을 3년이나 맡았던 인물이다.

지역 안배와 관련해서는 중장 진급자 6명 가운데 충청 2명, 호남 2명, 영남 1명, 강원 1명 등으로 대체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육군 준장 진급자 59명 중에서 호남 출신은 정현석 준장과 윤정상(서석고 졸업) 준장, 박노식(목포고 졸업·육군) 준장 등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육군이 75명, 해군 14명, 공군 22명 등 111명이 진급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상기(왼쪽에서 두번째)육군참모총장, 이홍기(왼쪽) 제30야전군사령관 등 장성 보직 신고를 받은 뒤 김관진 국방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는 위헌"

대법원, '합헌' 전제한 옛 판례도 모두 폐기
오종상씨 36년만에 무죄… 형사보상 길열려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 사건을 파기자판(破棄自判),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신 시절인 1974~75년 1호부터 9호까지 발동되면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며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인 이상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오씨의 긴급조치(제1호 제3,5항)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면소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관련 법령의 폐지를 이유로 면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로써 오씨는 36년만에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했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등에서 여고생에게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나" 등의 정부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은?

술자리·수업중 유신체제 비판이 절반

대법원이 16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다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를 보면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내렸으며 박 전 대통령 사망후 1980년 개헌에서는 '비상조치'로, 1988년 개헌에서는 '긴급처분·명령권'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시절 한시기구로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9건의 사건을 모두 조사했는데 282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중 박정희·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해당돼 가장 많았다.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이다.

191건(32%)은 유신반대·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었고, 85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정치활동, 29건(5%)은 국내재산 해외반출·공무원범죄, 2건(0.5%)은 간첩사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조치별로는 1호(헌법개정 반대 금지 등)와 4호(민청학련 관련) 위반이 36건, 3호(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9건, 나머지는 모두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사건이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유신체제 비판 발언으로 처벌받은 전형적 사례인 '오종상씨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고법이 올해 1월 재심을 시작했고 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고시원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허가제로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개축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5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대신 건축 신고 절차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85㎡ 이내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했으나 개정안은 3층 미만은 건축신고, 3층 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건축신고 때는 배치도, 평면도만 내기 때문에 내진 설계, 피난 안전 기준 등에 맞게 증·개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3층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고시원은 독서실, 학원처럼 50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고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했다.

현재는 1000㎡ 미만의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쉽게 들어설 수 있는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로 짓거나, 면적을 쪼갠 뒤 건축주만 달리해 집단적으로 고시원을 건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미리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국토해양부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주고 영구임대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선방안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거주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으나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만료 시점에서 기초수급자나 가구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해당하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 사망, 질병, 수해·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주변 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350만원, 월 8만~11만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개선안은 또 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에서 제외했던 영구임대 거주자도 가족이 많고 기초수급자 등 매입·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갖추면 입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영구임대는 23.1~39.6㎡인 반면 매입임대는 46.3㎡, 전세임대는 56.6㎡이다.

아울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 중 대학생 배정 물량을 종전 3% 이내에서 수도권은 10%, 지방은 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탈북자 실업률 9.2%…경제활동 열악"

탈북자의 실업률이 9.2%에 달하는 등 경제활동 상태가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북한이탈주민(탈북자)지원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입국한 전국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녀 탈북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 경제활동인구 511명 중 취업자 464명, 실업자 47명으로 실업률이 9.2%에 달했다. 또 조사대상자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각각 42.6%(511명), 57.4%(689명)으로 같은 시기(8월) 실업률 3.3%, 경제활동인구 비율 61.1%를 기록한 일반국민에 비해 경제활동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탈북자지원재단은 설명했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43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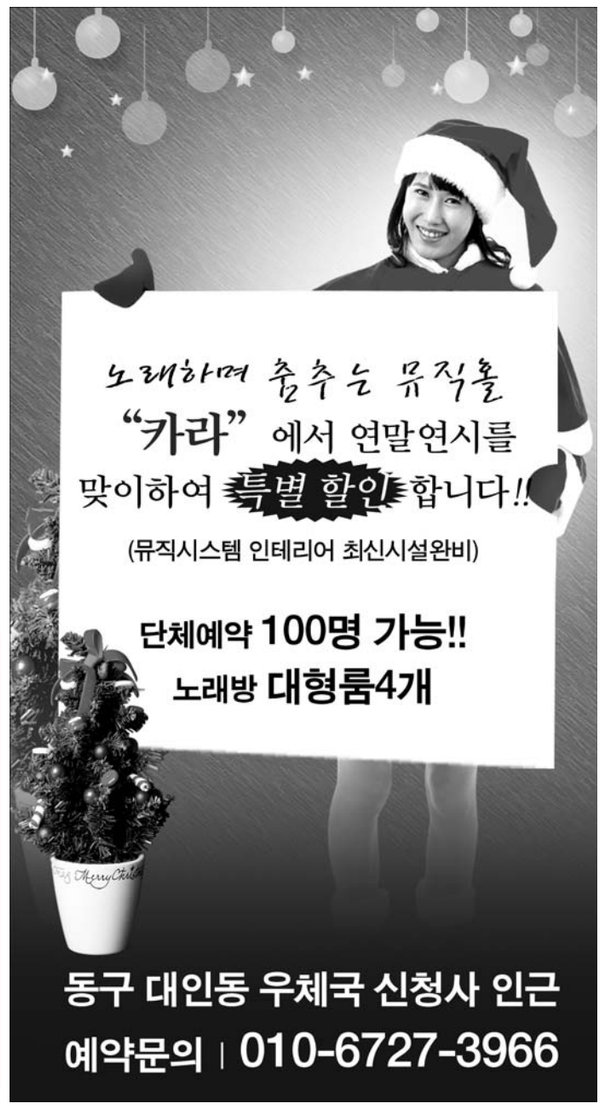
아울러 취업자의 직종과 업종은 전년에 비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직종은 단순노무·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높고 업종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